교육비 환불 규정(2025. 3. 1.)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2">환불금액</th><th>환불사유 발생일</th></tr>
<tr><td>교육비
(정규과정/에듀케어)</td><td colspan="2">이미 납부한 교육비를 일할 계산한 차액</td><td rowspan="4">학부모가
환불
또는
학적변경을
요청한 날</td></tr>
<tr><td>차량비</td><td colspan="2">이미 납부한 차량비를 일할 계산한 차액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특성화</td><td>수강 횟수가 2회 이상
(월 4회 기준)</td><td>환불하지 아니함</td></tr>
<tr><td>수강 횟수 2회 미만
(월 4회 기준)</td><td>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
해당액</td></tr>
</table>

※ 학적 변경(전학, 자퇴, 제적 등)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의 기준에 따른다.

※ 장기결석사유(질병, 입원 등)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비를 제외한 차량비와 특성화비의 환불을 위의 기준에 따른다.

※ 십원단위이하는 절하한다.

※ 유치원행사로 인하여 특성화수업을 하지 못 할 경우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
※ 코로나19와 같이 교육청의 등원인원 제한으로 원격수업과 현장수업이 병행될 경우

-> 특성화수업이 진행되어질 경우 특성화비는 환불되지 않는다.

-> 차량이 운행되어지는 경우 차량비는 환불되지 않는다.

※ 코로나19와 같이 교육청 등원제한으로 전면 원격수업이 이루어진 경우 특성화 교육비는 회수로 차감하여 환불되어 질 수 있다.